

##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1. 18.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- 부산시 도로점용료 조례개정으로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연8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하였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6퍼센트 이자율로 하향 조정하였음
- 이에 따라 우리구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분할납부 이자율을 부산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코자 함

### 2. 주요골자

-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8%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제2항의 규정 (현재 연6%로 하향조정) 적용으로 개정코자 함

### 3. 관계법령

- 도로법제43조,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

##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연8퍼센트의”를 “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점용료의 분할납부)                     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분할납부 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<u>연8퍼센트의 이자</u>를 붙인다. 다만, 지방세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.</p>	<p>제4조(점용료의 분할납부)                      ①(현행과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<u>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..</p>